

남 동 구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 람	기관의 장

제1787호
2023년 5월 12일
금요일

공 고

- 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|----|
| ○ 공 고 제 9 8 3 호 | 공시송달공고 | 토 지 정 보 과 | 2 |
| ○ 공 고 제 9 8 5 호 |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| 환 경 보 전 과 | 3 |
| ○ 공 고 제 9 8 7 호 | 도시관리계획[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(도림1지구)
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)(안) 공고 열람 | 도 시 재 생 과 | 12 |
| ○ 공 고 제 9 8 8 호 |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사회복지시설) 결정(변경)(안) 공고
열람 | 도 시 재 생 과 | 13 |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동구

편집 : 홍보실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3-983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(부동산 거래의 신고)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(과태료)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“폐문부재”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
2023. 5. 12.

남 동 구 청 장

1. 공고기간 : 2023. 5. 12. ~ 2023. 5. 27. (15일간)
2. 공고장소 : 게시판 및 남동구청 인터넷 홈페이지
3. 공고내용

처분의 제목	부동산 거래신고 위반과태료(지연신고) 부과예고 통지						
당사자	성명 (명칭)	홍○자					
	주 소	인천광역시 남동구 경○○로 ○○○, ○동 ○○○호 (간석동,○○아파트)	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○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(부동산 거래의 신고)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(지연신고) ○ 과태료 부과 금액 : 250,000원						
법적 근거	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제28조제2항						
문의처	제출처	기관명	남동구청	부서명	토지정보과	담당자	신용준
		주소	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			전화번호	032)453-2483
						팩스번호	032)453-2479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3-985호

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군·구 조례로 정하도록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4항(2021.7.20.)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. 5. 12.

남 동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(공중화장실 설치기준) 개정·시행(2021.7.20. 개정, 2023.7.21. 시행)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기준 단서조항 등을 개정하여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

2. 주요내용

- 안전관리 시설의 목적 및 정의와 종류(안 제2조제2호)
-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범위(안 제5조의2)
- 맞춤법 교정 및 중복되거나 잘못된 인용 조문 등의 수정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(환경보전과장)에게

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: 구민의 권리·의무와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
사안으로,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함

※ 의견 보내실 곳

- 주 소 : (21589)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환경보전과
- 연락처 : ☎ 453-2342 FAX 453-2609
- 남동구 홈페이지(www.namdong.go.kr/입법예고)

4. 참고사항

- 일부개정조례안

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23년 5월 일

제 출 자 : 남 동 구 청 장

☐ 제안이유

-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을 군·구 조례로 정하도록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제4항(2021.7.20.)이 신설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☐ 주요내용

- 안전관리 시설의 목적 및 정의와 종류(안 제2조제2호)
-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범위(안 제5조의2)
- 맞춤법 교정 및 중복되거나 잘못된 인용 조문 등의 수정

☐ 본 문 : “별첨”

☐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첨”

☐ 참고자료

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

남동구 조례 제 호

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”를 “남동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복지증진”을 “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공중화장실·개방화장실·이동화장실·유료 화장실”을 “공중화장실, 개방화장실, 이동화장실, 간이화장실, 유료화장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안전관리 시설”이란 범죄 예방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시설 등을 말하며,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가.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경광등 또는 경고음이 작동하며,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부재 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음성 연결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)

나. 안심스크린(불법촬영의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칸 측면의 하단부 등 빈 공간을 막을 수 있는 시설)

다. 그 밖에 안심거울 등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장치 및 시설

제5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안전관리 시설의 설치) ① 남동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(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)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 중 “남동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</u>	<u>남동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<u>복지증진</u>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용</u> <u>환경 조성</u>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
1. “공중화장실 등”이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、개방화장실、이동화장실、유료 화장실을 말한다.

2. “안심스크린”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·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.

제5조(설치기준)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-----

----- 공중화장실、개방화장실、이동화장실、간이 화장실、유료화장실-----
-----.

2. “안전관리 시설”이란 범죄 예방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시설 등을 말하며,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가.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경광등 또는 경고음이 작동하며,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부재 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음성 연결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)

나. 안심스크린(불법촬영의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칸 측면의 하단부 등 빈 공간을 막을 수 있는 시설)

다. 그 밖에 안심거울 등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장치 및 시설

제5조(설치기준) -----

-----.

1. ~ 5. (생략)

6.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상·하단부의 공간을 막거나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.

7.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

<신설>

제6조(위탁관리 등) ① 남동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삭제>

제5조의2(안전관리 시설의 설치)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(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)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6조(위탁관리 등) ① “구청장”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[참고자료]

□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

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,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·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 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·소변기 수의 1.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, 휴식시설,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8조를 준용한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 화장실 등에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21. 7. 20.>

⑤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7. 20.>

⑥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「하수도법」에 따라 처리한다. <개정 2021. 7. 20.>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 7. 20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[시행일: 2023. 7. 21.] 제7조

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그 밖의 문제점		
부서별 의견			
협의개요	부 서	제출의견	검토내용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3-987호

도시관리계획[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(도림1지구)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)(안) 공고·열람

도시관리계획[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(도림1지구)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)(안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5. 12.

남 동 구 청 장

1. 도시관리계획[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(도림지구1) 지구단위계획] 결정(변경)(안) 주요내용

- 위치: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111-6번지 일원
- 결정(안) 주요내용
 - 소로 2-2호선, 노선 축소: (기정) $L=200m$ → (변경) $L=160m$
 - 소로 3-4호선, 가각 조정: (기정) $A=709.5m^2$ → (변경) $A=701.3m^2$ * 현황 여건을 반영한 도림1지구 내 소로 2-2호선, 소로 3-4호선 변경

2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-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- 의견제출
 -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3. 열람 장소

- 남동구청(도시재생과, 032-453-2952, 남동구 소래로 633)

4. 관계도서: 게재 생략 (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)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3-988호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사회복지시설) 결정(변경)(안) 공고·열람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사회복지시설) 결정(변경)(안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5. 12.

남 동 구 청 장

1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사회복지시설) 결정(변경)(안) 주요내용

- 위치: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39번지 일원
- 결정(변경) 내용
 - 위치: (기정) 남촌동 340, 341-2번지 → (변경) 남촌동 339번지 일원
 - 면적: (기정) $A=483\text{m}^2$ → (변경) $A=772\text{m}^2$ (증289 m^2)
- * 사회복지시설 사업계획을 반영한 위치 및 면적 변경

2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-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- 의견제출
 -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3. 열람 장소

- 남동구청(도시재생과, 032-453-2952, 남동구 소래로 633)

4. 관계도서: 게재 생략 (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)